

행정행위의 폐지

취소(직권취소 + 재송취소) + 철회

- 취소 –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
- 철회 –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에 의해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별개의 독립된 행정행위
- 직권취소 v. 재송취소

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차이

직권취소

- 행정청(처분청, 감독청)
- 행정의 적법상태회복 및 행정목적 실현
- 개별법
-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
- 기간 제한 없음
-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있음

쟁송취소

- 행정청(재결청) 또는 법원
- 행정의 적법상태를 확보 및 국민의 권리이익구제
- 행정심판법, 행정소송법
- 주로 침익적 행위
- 기간 제한 있음
- 소급

행정행위의 직권취소

- 관념

- 의의

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그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

- 취소 -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의 효과를 사후에 소멸

- 무효선언 - 처음부터 무효임을 선언

- 철회 - 사후의 사정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킴

- 취소에 관한 일반법은 없음

취소권자

- 처분청 – 명문의 근거없이도 가능
- 감독청은?
 - 소극설
 - 처분청에 대해 취소를 명할 수만 있고 직접 취소 불가
 -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감독청이 가능 함
 - 적극설 –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감독의 목적달성을 위해 취소권을 갖는다고 함

취소의 사유 및 취소의 자유제한

■ 취소사유

■ 단순위법한 행정행위

- 중대하나 명백하지 않은 하자; 또는
- 명백하나 중대하지 않은 하자

■ 부당한 행정행위

■ 취소의 자유와 제한

■ 수익적 행위의 경우

■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 - 취소가능

취소의 자유 및 제한

-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
 - 위법하나 수익적인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취소가 제한됨
 - 법률적합성의 원칙 v. 신뢰보호원칙의 충돌
 - 관계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 +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하고 또 신뢰이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 제한
 - 판례
 -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
 - 취소가 제한되는 영우

-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
 - 행정행위가 사기, 협박, 뇌물 등의 부당한 방법에 기인한 것(LPG판매업허가취소사건-299면 판례1)
 - 부당 또는 불완전한 신고에 기인한 것(허위 고교졸업증명서- 판례2)
 - 행정청의 상대방이 행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,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몰랐을 경우

- 취소가 제한되는 영우
 - 실질적 존속력을 갖는 행위
 - 하자의 치유나 다른 행위로의 전환이 인정되는 경우

- 침익적 행위의 직권취소
- 일부취소 - 가능
- 직권취소의 절차
 - 일반법 없음
 - 개별법에 따르면 됨
- 취소의 효과 - 소급이 원칙
수익적 행위의 취소의 경우 장래적

하자있는 직권취소

-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
-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
 - 상대방 - 행정쟁송으로
 - 처분청은?
 - 소극설 - 취소처분을 취소해도 원처분 회복 불가
 - 적극설 -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된다고 봄
 -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가 가능
 - 절충설 - 원칙적으로 취소의 취소는 불가, 예외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소의 취소를 인정

복효적 행위의 취소

- 혼효적 행위
 - 침익과 수익이 동일인에게 귀속
 - 일반원칙에 따라
- 제3자효 있는 행위와 직권취소
 - 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함
 -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공익과 비교해야 함

철회

- 의의 -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발생한 이유로 그 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별개의 의사표시
- 기능 - 사실관계나 법관계의 변화
공익실현을 위해 모순되는 행위 시정

법적 근거

- 통칙규정 없음

- 근거불요설

-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
 - 원행정행위의 수권규정이 철회의 근거규정
 - 행정의 공익실현을 위해 처분청에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

- 근거필요설

- 침익적 행위는 불요/ 수익적 행위는 필요

철회권자

- 처분청 - (근거불요설)
처분청이 가지는 권한에 당연히 포함됨
- 감독청
 - 철회는 새로운 독립적인 행정행위이므로,
감독청이 철회한다면 권한을 침해하는 효과

철회의 사유

- 침익적인 행위의 철회 - 가능
- 수익적 행위의 철회
 - 철회에 따라 얻는 공익이 제3자에게 수익적인지 침익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
 - 철회권의 유보
 - 부담의 불이행과 같은 제재로서의 철회
 - 수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
 - 수익처분의 근거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
 - 부관으로 부담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- 사실관계의 변화

- 공동체의 이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박한 침해의 제거가 요구되는 경우
- 사실관계에 대한 행정청의 단순한 견해변화는 철회사유 X

- 법적 상황의 변화

- 수익처분을 함에 있어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허가 조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
- 법령의 개폐에 의해 행정청이 더 이상 원행정행위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

- 공익상 중대한 침해

- 철회하여야 할 공익적 요구가 존재하는 경우
- 불확정 개념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

철회의 제한

- 침익적 행위 – 기속행위,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자유로움
- 수익적 행위
 - 철회로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간의 이익형량이 문제
 - 신뢰보호의 원칙
 - 철회사유가 발생한 후 아무런 처분이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
 - 상대방의 귀책사유(철회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)

- 평등원칙 및 자기구속의 법리
- 실권의 법리
 - 실권 – 행정청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권리가 행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된 경우 그 권리는 행사할 수 없음

- 적용요건

- 행정청이 취소나 철회사유를 알고 권리행사가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야 함
-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어야 함
- 상대방인 국민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

- 적용효과 -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제재권은 소멸

- 일부철회 - 법효과가 분리가능하면 일부 철회가능

철회의 행사

- 철회권 행사의 보충성
 - 철회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방법 유무
 - 전부철회보다는 일부철회
 - 공익과 사익의 형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름
- 철회의 절차
 - 규정없으면 원행정행위와 동일하게
 -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유제시

철회의 효과

- 장래효

철회의 행사

- 철회처분의 하자
 - 중대명백 - 무효
 - 단순위법
 - 적극설(긍정설) - 철회취소 원상회복
 - 소극설(부정설) - 철회의 취소는 불가능

행정행위의 실효

- 실효의 의의

- 행정행위의 효력이
-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
-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
- 장래를 향하여 소멸되는 것

- 무효 / 실효는 일단 발생한 효력이 소멸
- 취소 / 적법요건의 하자과 무관
행정청의 의사와 무관
- 철회 / 행정청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님

실효의 사유

- 대상의 소멸
 - 사람의 사망, 자동차소멸, 사업면허의 대상소멸
-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
 - 자량의 종기부 임시운행허가
- 목적의 달성
- 새로운 법률의 제, 개정
 - 이전의 법과 상충되는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
- 실효의 효과
 - 장래에 향하여 소멸
 - 행정행위실효확인 또는 행정행위효력존재확인소송